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담당 : 정승원(010-4456-5047)

민주당 혁신위, 제2차 혁신안 발표

- 제2차 혁신안 발표, '기득권 타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 기득권 타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혁신의 길
- 민주당 먼저 혁신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더민주 혁신위)는 지난 6일 1차 혁신안에 이어 오늘(12일)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제2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가 핵심내용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는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를 포함하여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윤리특위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로 징계수준 강화 제안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에는 지역

구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이 축의금 및 부의금 제공을 금지할 것을 제시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계속해서 혁신을 얘기함은 민주당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며,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얘기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며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기득권, 관행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국민께서 옳지 않다 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고, 더욱 더 국민과 당원의 길을 따르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앞으로 예고된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혁신안> 등의 발표가 남은 상황에서 혁신위 역할과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 첨부 : 더민주 혁신위 제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문
제2차 혁신안(표)

더민주 혁신위 제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문

<장경태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공동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지난주 1차 혁신안으로 정치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혁신을 얘기함은

민주당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며,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얘기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편에서

앞장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겠습니다.

기득권, 관행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국민께서 옳지 않다 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고, 더욱 더 국민과 당원의 길을 따르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의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2차 혁신안 발표>

■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제2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18대, 19대 국회 ‘0 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
최근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 건수입니다.

부디 이 수치가 국민 앞에 보이기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길 바랍니다.
유명무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었길 바랍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백한 허위 발언임을 알면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게 됩니다.

2차 혁신안의 첫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입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등 징계사항을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윤리조사위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시민의 의견을 듣고 판정할 수 있도록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은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는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조사위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연장해도 최장 9
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윤리특위는 조사위와 시민배심원단의 조사와 의견을 존중하여 30일 이내
에 판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
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까지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까지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2차 혁신안의 둘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안 될시엔 최초 개议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 후 즉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체포동의안의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 표결’이 아닌, ‘기명투표’로 하여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2차 혁신안의 셋째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 금지’입니다.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합니다.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정치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혁신의 길입니다.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률,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은
국민의 뜻과 지지를 기반으로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혁신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치권에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장경태, 조운애, 김미숙, 김승원, 김어진, 김준혁, 김필성, 김현임, 민형배, 박용
수, 오성일, 유정주, 윤영덕, 원현우, 장승진, 지경훈, 조경훈, 전용기, 정다은,
한아름, 홍창민, 황은주, 황운하 일동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제2차 혁신안 >

의제	주요 내용	비고
기득권 타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특위 상설화 ▶ 윤리조사위 신설, 60일 이내 조사 및 처리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시민배심원단 의견 공개 의무화, 윤리특위 시민배심원단 의견 존중하여 판정 후 30일 이내 본회의 상정 ▶ 징계강화 :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 발언한 경우> 사유 추가 90일 → 180일 이내 출석 정지 	국회법 개정
<p>▶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윤리특위 구조 개편) <small>※(징계사유 추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small></p> <pre> graph TD A[① 징계요구] --> B[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B -- "② 징계안 30일 이내 회부" --> C[윤리조사위원회 (외부위원)] B -- "② 징계안 30일 이내 회부" --> D[시민배심원단 (10인 이상 30인 이내)] C -- "③ 60일 이내 판정 (30일 추가)" --> E[윤리특별위원회] D -- "③ 60일 이내 판정 (30일 추가)" --> E E -- "④ 조사위, 시민배심원단 존중하여 판정" --> F[본회의 상정(30일 이내)] </pre>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 (현행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 체포동의안 표결방법 '기명투표' 	국회법 개정
선출직공직자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 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